2020

# 예술지원사업 성과관리 요령

- 보조금 집행 및 정산 -

2020. 3.



# 2020 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안내

- 본 <2020 예술지원사업 성과관리 요령>은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
- 2020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본 집행요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 해야 합니다.
-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
  - 대전문화재단「문화예술보조사업 지원금 관리규정」
  - 대전광역시「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



# 목 차

1	 	행 및 정산 개.	Ⅰ. 보조금 집	Ι.
4	 <u>o</u>	단계별 세부	Ⅱ. 업무추진	П,
4	 	교부신청 단	- 보조금	
7	 	집행 단계	- 보조금	
10	 	산)보고 단계	- 성과(정	
12	 	질문[Q&A]	Ⅲ. 자주하는	Ш,
15	 서 양식 ·	및 성과보.	<b>첨부</b> 교 부 신 청	첨부

#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개요

- 예술지원사업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, 정산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, 예술인 (단체)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설명서의 전문(全文)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dcaf.or.kr) 자료실에 파일로도 올려져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1. 적용대상사업 : 2020 예술지원사업

## 2. 관련 규정

- 가. 대전광역시 「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
- 나. 대전문화재단「문화예술보조사업 지원금 관리규정」

## 3. 업무 흐름도



# 4. 추진단계별 세부내용

	추진단계	시행 주체	시행 시기	주요 내용	방법
1	지원 대상 확정	재단	_	- 2020 예술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	
2	사업포기 신청	보조 사업자	심의결과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	-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및 사업포기 신청 ※ 해당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는 재단의 차기 지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 발생	-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-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
3	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	보조 사업자	교부신청 전	- 보조금 관리통장 신규개설 및 문화예술지원 전용카드 발급 ※ 기존 개설 중인 통장 사용 불가	하나은행 대전시청점 이용
4	보조금 교부신청	보조 사업자	사업개시 1개월 전 까지	-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제출서류: 교부신청서, 통장사본)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
5	보조금 교부	재단	교부신청 접수 후	- 사업 예산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지급 ※ 변경사항에 따라 보조금 삭감 및 취소 가능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
6	지원사업 변경신청	해당 보조 사업자	교부신청 이후	- 재단(담당자)에 유선통보 후 변경신청서 제출 ※ 보조금 교부 신청 후 사업이 변경된 경우 해당	-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-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
7	사업수행	보조 사업자	교부금 수령 이후	- 보조금 수령 후 해당사업 진행 및 집행 ※ 보조금 수령 전 사용분 불인정	
8	현장평가	재단		- 전문가 평가(프로그램 등), 만족도 조사 등	현장평가
9	보조사업 성과(정산)보고	보조 사업자	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	- 사업수행 결과,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보조금 최종 성과(정산) 보고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
10	성과(정산)보고 확정	재단	성과(정산)보고 접수 이후	- 최종 성과(정산)보고서 검토 후 확정	
11	잔액 반납	보조 사업자	성과보고서 확정 이후	- 사업비 잔액, 불인정 금액, 이자 등 잔액 반납	계좌이체

-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: www.ncas.or.kr
- ※ 대전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지원사업은 별도 절차나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위의 절차를 따릅니다.

## 5. 주요 내용

- 가.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정산(성과)보고는 국가문화예술지원스템(NCAS)을 통해 신청 제출
- 나.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성과(정산)보고서 제출
- 다. 인건비 지급 후 성과(정산)보고 시 원천징수영수증(세무서신고) 첨부
- 라.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는 주요 변동사항 및 안내사항 숙지
  - ※ 홈페이지 http://www.dcaf.or.kr/ 공지사항 수시확인
- 마. 주요 공지는 교부신청서에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지원 단체 및 개인의 연락처(이메일 및 전화번호)등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업 담당자에 유선 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
- 바. 사업포기, 사업내용 변경, 보조금 교부, 성과(정산)보고 등 절차 별 행정처리 기한 준수 ※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 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- 사. 재단이 정한 절차, 기일,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사항 별 제재, 위법·횡령 등 주요법률위반행위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며, 향후 해당 보조 사업자가 신청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페널티로 적용될 수 있음
- 아. 사업 평가결과의 차기년도 지원심의 반영
  - 1) 대전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,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.
  - 2) 보조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향후 최대 3년 간 지원신청 시 불이익(지원대상 제외 등)을 받을 수 있음. 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결정 발표 후 30일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 없음
  - 3) 성과(정산)보고서의 지정 제출 기한 미 준수 시 당해 연도 사업의 평가 등에서 페널티 적용
- 자. 문학 분야 창작집 발간 사업의 경우 이전에 발간된 개인 창작집 및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, 타인의 작품으로 작품집을 발간하거나 기존 작품을 표절 또는 모방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(출판 후 표절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)
- 차. 사업의 각종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, 전단, 팸플릿 등), 인쇄물 제작 시 보조금 지원 기관을 후원사로 표기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로고와 문구를 삽입 인쇄하여야 함

후원 표기	후원 : (재)대전문화재단淡
문구	이 사업은 대전광역시, (재)대전문화재단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았습니다.
삽입 로고	2019-2021 당근의 남

# П

# 업무추진 단계별 세부 내용

#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

## □ 보조금 교부 절차

## 보조 사업자

보조금 관리계좌 신규개설 및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



## 보조 사업자

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한 교부신청



### 재 단

교부신청 최종 승인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교부신청
  - 교부신청 시 보조금 관리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사전 신규계좌 개설 필수



-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 신청 시 신청서류 지참하여 은행 방문
-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] 내 [교부/변경 신청] [사업비카드발급신청] [신청대상 사업 선택] - [신청서 출력]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은행 방문

### 1. 보조금 교부조건

가. 사업 진행 절차, 기일, 기준 준수

절 차	기 한
교부신청	사업개시 1개월 전
성과·정산보고서 제출	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
정산내역 보완	보완요청 후, 7일 이내(정산자료 5년간 보관)

- 나.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
  - 1)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함
  - 2)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성과(정산)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영수증을 포함한 집행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

### 2. 보조금 신청

- 가.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및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
  - 1)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관리(신규개설, 1개 사업 1계좌)
    - ※ 문화예술지원 전용카드는 필요 시 발급

### 2) 신청방법

- 개인 : 신분증, 도장 💥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외 타지점 이용 시 사업 수행 공문 필요
- 단체

구분	법인 (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 보유한 단체 포함)	법인 이외의 임의단체 (고유번호증 보유,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등록번호 미보유 사업자등록증)
본인 또는 대표자	·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· 대표자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 ·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 ·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· 회칙 또는 정관 · 회의록 또는 대표자 임명장(위촉장)	·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· 대표자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 · 단체 도장 · 회칙 또는 정관 · 회의록 또는 대표자 임명장(위촉장)
대리인	· 사업자등록증 · 대리인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 · 위임장(법인 인감 필수 날인) · 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 ·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· 회칙 또는 정관 · 회의록 또는 대표자 임명장(위촉장)	·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· 대리인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 · 단체 도장 ·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· 회칙 또는 정관 · 회의록 또는 대표자 임명장(위촉장)

- 문화예술지원 전용카드 발급 신청방법
  - :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] 내 [교부/변경 신청] [사업비카드발급신청] [신청대상 사업 선택] - [신청서 출력]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은행 방문

### ※ 유의사항

- 1. 법인인감증명서·법인등기부등본·개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함
- 2. 본인 및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(대표자)가 직접 발급해야 함
- 3. 위임장 또는 공문에는 대리인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, 직위, 연락처 등) 위임 내용이 기입되어야 함
  - 위임내용 예시 : 계좌개설, 인터넷뱅킹, 체크카드 발급에 관한 은행업무를 위임합니다.
- 4. 통장 및 카드 대리인 해지 시 신규 발급과 동일과 서류 지참하여 지점으로 방문 해지하여야 함(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해지 불가)
- 5. 발급 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확인 바람

### 나. 보조금 교부신청

- 1) 신청 방법 :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] 내 [교부/변경 신청] [교부신청관리] [신청서 작성]
  - ※ [첨부1]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교부신청 시 파일 첨부
  - ※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교부신청 완료

### 2) 필수 제출서류

① 교부신청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양식에 작성

② 첨부1: 사업계획서(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지정 양식)

③ 첨부2 :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

④ 첨부3 : 이행보증보험증권 -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의 시업을 운영하는 보조시업자에 한함

3) 지원결정 이후 대표자가 바뀐 단체는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여햐 함

※ 절차 : 사업 담당자 유선 통보 → 대표자 변경 신청 → 해당기관 승인

### ※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본 원칙

당해 연도 사업 집행 완료 - 지원사업(보조금 집행 포함)은 2020. 12. 31.까지 완료되어야 함

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 집행내역 불인정 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보조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(대관료 경우 예외)

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

-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,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용역·하도급 집행 금지

-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 할 수 없음

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

-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으로 편성되어야 함

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-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(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)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

### ※ 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

인정불가 경비	세부 내역
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	-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(회의거마비, 강사료, 연출료, 안무료, 출연료, 진행비, 예술감독비, 전시기획비, 심사비, 연구비 등) - 단체 대표자 및 지원사업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집행되는 사업비
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	-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
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	- 회의비(식비), 간담회비,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, 상금 등
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	-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
기타 사항	-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-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- 상품 구입 배송비

다.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

라. 이체 수수료 사용 시 예산 내 편성 가능

마. 보조금의 교부

- 보조금의 교부시기 : 최종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※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
## 3.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

- '교부신청 사업계획'과 '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'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, 재단은〈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기준〉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

〈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〉

변경 내역		변경 기준	조치 사항	비고	
사업주체	주최자	사업의 주체 변경	지원결정 취소		
11017E	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	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(횟수) 50% 초과 축소	보조금 삭감	※ 실제 공연/전시일수로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	
사업규모 사업장소의 규모 규모		지원신청 당시 사업장소 규모의 50% 초과 축소	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	<ul><li>※ 공연: 객석 수 기준</li><li>※ 전시: 전시장 면적 기준</li></ul>	
주요 참여자	주요 출연진제작진 변경 및 축소	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	공연 분야		
	기획자 변경 혹은 참여 작가 변경 및 축소	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	시각 분야		
사업내용	작품	작품 및 작가 변경	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	연극 분야	
		공연 프로그램 50% 초과 변경	H 조 기 최소 IT 나 시기	and Hol	
<u>프노</u> 그림	프로그램	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변경된 경우	· 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 - -	공연 분야	
사업수행	사업수행	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	향후 최대 3년 간 지원불가	사업 포기 신청기간(결과 발표 30일 이내) 내 포기 신청은 불이익 없음	

※ 위 기준표의 '변경기준'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 있더라도 '지원사업 변경신청'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위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내용은 재단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름

# 보조금 집행 단계

## 1. 보조금 집행 주요 사항

- 가. 보조금 집행 전 숙지사항
  - 1) 모든 보조금은 **별도의 보조금통장(신규개설) 계좌로 관리**하여야 하며,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.(1사업 1통장 원칙)
  - 2) 보조사업자가 사정에 의하여 최초 편성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집행 이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(경비의 배분, 예산항목 간 조정, 일정, 장소변경 등 / '사업변경 승인 신청')
    - ※ 사업계획 변경은 단 1회에 한함

### 나. 사업 개시일 이전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

-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(대관료가 선불일 경우 예외),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.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사후에 보 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.

### 다. 현금 인출 사용 불가

-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없음
- 라. 회계연도 준수 원칙
  - 보조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은 **당해 연도 안에 완료**해야 함
- 마. 예산내역 변경 절차
  - 1)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교부 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  - ※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변경을 거부하거나,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
  - 2)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보조사업 지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재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
- 바.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
  - 1)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각종 명목으로의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불가 (강사료, 연출료, 안무료, 출연료, 진행비, 예술감독비, 전시기획비, 심사비, 연구비 등)
- 2)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및 집행 불가사. 보조사업 변경 및 조치
  - 1) 사업계획 변경은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단의 승인을 거친 후 변경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  - 2) 심의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으로의 사업변경은 불가

## 2. 보조금 집행 항목 예시

가. 공 연: 대관료, 홍보물 인쇄비, 객원 연주료, 무대제작비, 의상대여비 등

나. 전 시 : 대관료, 홍보물 인쇄비, 재료비(소모품) 등 다. 문 학 : 책자 인쇄비(교정비 포함, 원고료는 제외)

## 3. 집행용도별 증빙서류 안내

증빙선택		집행증빙서류 (성과보고 시 제출)
<b>তি স</b> ্থাপ	집행용도	집행증빙서류
전자(세금) 계산서	임차료, 홍보 및 마케팅, 제작비, 기타운영비, 제세 등	① 이체확인증(은행거래 내역서) ② 전자(세금)계산서 ③ (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)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: 임차료의 경우 공간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
전용카드		① 카드영수증 ② (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)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
기타	<b>개인사례비</b> 인건비, 사례비, 용역비 등 인건비성 비용	① 이체확인증 ② 계약서(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준용한 계약서 반드시 제출) ③ 인건비 청구 영수증 - [첨부5] ④ 원천징수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 ※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,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※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



- ※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(반드시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)
- ※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
- ※ 카드지출 시 구체적인 내역확인이 가능한 경우, 거래명세서/견적서 대신 카드영수증만 제출해도 무방함
- ※ 모든 보조금 집행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. 단,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로 재 증빙한 경우 예외로 함.
- ※ 출연자 및 스태프 등의 인건비 지급 시 출연(근로)계약서와 인건비 청구영수증을 작성해야 함
  - 문화예술분야 관련 계약서 양식 :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참고
  - 인건비 청구 영수증 : [첨부5]
- ※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의무화
  - 인건비 이체 시, 받는 이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은행, 계좌번호 등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함.
  -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2014년 부터 의무화 됨.

### ※ 원천세 납부 요령 (문의 : 국세청 국번없이 '126' 또는 관할 세무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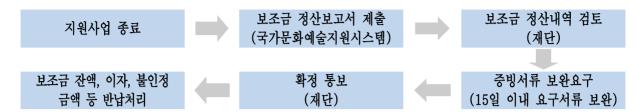
- 1. 사업소득(3.3%), 기타소득(8.8%)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 (본업일 경우 사업소득,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. 자세한 사항은 관합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)
- 2. 사례비·인건비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대방 계좌로 입금
- 3. 원천장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
- 5. 원청세액을 보조금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
- 6.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정산보고 시 첨부 제출
- ※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원천세 반기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
- ※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
- ※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(월별납부)까지 완료해야 함
- ※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바람

## 4.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의 반환

- 1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(일부)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.
  - ※ 대전문화재단 '문화예술보조사업 지원금 관리규정' 제12조. 제18조 해당 항목
  - 제12조(교부결정의 변경·취소) ①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② 재단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.
    - 1.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
    - 2.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(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)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    - 3.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. 제9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- 4. 보조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
    - 5. 그 밖의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
  - 제18조(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)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   - 1.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- 2.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- 3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
    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    - 5.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, 평가를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
- 2) 보조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지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해야 함 미반납 시 반납할 때까지 사업 지원신청 불가

# 성과(정산)보고 단계

## □ 지원사업의 정산, 성과보고 절차



## 1. 성과(정산)보고 시 제출자료

- 가. 성과보고서 제출
  - 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
    - ·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] 내 [정산/사업실적] →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※[첨부4] '정산실적보고서' 양식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

# 나. 사업 성과 증빙자료



구 분	증빙 제출자료 내역	제출 방법
• 사업성과	- 전단, 프로그램 등 인쇄물 - 보도자료, 티켓, 동영상 -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사진	방문 및 우편제출 ☞ 대전문화재단
증빙자료	- 도록, 자료집, 관련책자 각 1부 - 동영상 파일 1개(해당경우만 제출)	방문 및 우편제출 ☞ 대전문화재단
• 정산증빙자료 (10p 집행용도별 증빙서류 참고)	<ul> <li>계좌이체 시 : 이체확인증, 전자(세금)계산서, 견적서, 업체 사업자 등록증사본, 업체 통장사본 등</li> <li>카드사용 시 : 카드영수증, 견적서</li> <li>인건비 : 이체확인증, 계약서, 인건비청구영수증, 원천징수지급명 세서,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</li> </ul>	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

※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, 시민들을 위한 공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.

### 2. 성과(정산)보고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가. 모든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수행 성과(정산)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나. 성과(정산)보고 기한: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
- 다. 집행 잔액 반납 의무
  -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예금이자는 성과(정산)보고 시에 재단이 제시하는 절차에 의해 반납하여야 함.

### 라. 제출 서류의 보관 의무

-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해 재단에 제출한 지원신청서, 교부신청서 및 보조사업 통장,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정산, 성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
- 마. 정산서를 미 제출하거나 정산서 내용이 부실한 단체(개인)는 차기년도 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공모신청 심의 시 행정점수 반영
- 바. 문학예술 분야의 발간 책자는 반드시 ISBN, ISSN 표기 의무
- 사. 공연예술 분야의 정산 시 지원사업 공연실황 동영상 파일 제출의무
- 아. 위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### 3.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 준수 관련 조치

- 지원사업자가 재단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〈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 준수 관련 조치 기준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함.

### 〈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 준수 관련 조치 기준〉

구 분	적 용 방 법
정산기한 내 성과보고 완료	- 불이익 없음
정산기한으로부터 30일 초과 시	- 30일 당 1점 감점
성과보고 미제출	- 향후 성과보고 제출 시까지 대전문화재단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
# 교부신청

## 교부신청/필수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, '보조금 운용지침'에 준거하여, 지원 결정대상자가 ① 보조금 전용의 관리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고(필요시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발급) ②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통장사본과 함께 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교부신청하셔야 합니다.

- 통장개설 시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하시면 됩니다.
- \* 예시 : (사)극단대전문화(홍길동)

## 교부신청/보조금관리통장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사업별 별도의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
- ☞ 보조금 통장개설 및 카드 발급은 '하나은행 대전시청점'이용 권장
- ☞ 카드 발급이 필요할 경우,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] 내 [교부/변경 신청] [사업비카드발급신청] [신청대상 사업 선택] [신청서 출력]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전용 카드 발급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은행 방문 /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이용

# 교부신청/제출기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
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대전문화재단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# 교부신청/변경내역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사업 변경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모든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 전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유선통보 하여 주시면 신속한 승인 처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.

※ 사업명 변경은 절대 불가 하며, 교부신청 후 사업변경(지출예산 포함)은 단 1회만 승인 가능합니다.

# 교부신청/사업포기 사업포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사업 포기신청은 심의결과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 단, 사업담당자와 먼저 협의를 하셔서 불이익 등을 꼭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사업 성과(정산)보고

성과보고/기간 사업비 성과(정산)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성과(정산)보고서는 사업일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 성과보고서의 지정 제출기한을 초과할 경우 차기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심의 시 불이익이 발생 되므로, 반드시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각종 사업성과물(도록, 포스터, 출판물 등) 및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 자료도 성과(정산)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정상 접수 처리 됩니다.

성과보고/원천세납부 '원천세납부'란 무엇이며,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보조금 집행항목 중 특별출연료, 연출료, 안무료, 강사료 등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신 후에 계좌이체를 진행하셔야 하고, 원천징수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, 납부 영수증은(은행 수납 등 증빙서 포함)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특별출연자 A에게 출연료 300,000원을 약정 후 이를 지급하고자 할경우 기타소득 8.8%(주민세 포함)인 26,400원을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대상 금액은 273,600원이며, 원천징수한 26,400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원천징수 기준 금액: 125,000원부터 원천세 납부 의무

성과보고/보조금사용 보조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
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 집행 가능합니다. 보조금 교부 이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자부담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. (대관료의 경우 예외)

성과보고/보조금사용 계좌이체 시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보조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?

계좌이체 등 보조금 집행 시 발생되는 금융수수료는 보조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교부신청 시, 예산계획 과정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편성하시면 됩니다. 단, 자부담 사용 시 발생되 는 금융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.

# □ 각 사업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

사업명	연락처
- 청년예술인창작지원·중견예술인지원(음악, 전통(국악), 무용, 연극 분야) -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-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	042) 480-1031
- 장애예술인창작및문화예술활동지원 - 마을대표축제및상설공연지원 - 지역대표공연예술제	042) 480-1032
- 청년예술인창작지원·중견예술인지원(문학 분야) - 원로예술인지원(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 분야) - 차세대artiStar지원	042) 480-1033
- 청년예술인창작지원·중견예술인지원(시각예술 분야) -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	042) 480-1034

첨부

#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 관련 양식

# 2020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계획서

공모사업명	2020 청년예술인창작지원 ※재단선정사업명 7째 분 야 음악		
신청사업명			
	총 사업기간	2020년 월 일 ~ 2020년 월 일	
사 업 일 정	실 사업기간	2020년 월 일 ~ 2020년 월 일	
	일정상세	총 일 / 00:00 ~ 00:00, 매주 0요일 휴관	
	장 소 명		
사업 장소	주 소	(00000)대전광역시 00구 00로 00번길 000	
	규 모	좌석 수(공연장) or 공간 면적(전시장) 등	
주 관	단체명(개인명)	기입	
후 원	대전문화재단, 대전광역시 기타후원처가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주십시오.		
	단체명/이름		
	rll ㅠ 지 며	연 락 처 010-	
신 청 단 체	대표자명	이 메 일	
/ 신 청 자	실무자명	연 락 처 010-	
	결구시경	이 메 일	
	주 소	(00000)대전광역시 00구 00로 00번길 000	
사 업 비	보 조 금	0,000,000(원) 자 부 담 0,000,000(원) ※해당사항 있는 경우	

- ※ 아래 확인사항을 모두 체크 또는 칠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이 교부신청서는 사업평가 및 관리를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. □ 확인
  - 저작권 관련 모든 책임은 운영주체인 신청단체(개인)에게 있습니다. □ 확인
  - 모든 인쇄물에 〈본 시업은 대전문화재단, 대전광역시에서 시업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.〉라고 기재합니다. □ 확인
  - 이 교부신청서 내용에서 수정·변경시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고 변경신청—승인 후 시업을 추진합니다. □ 확인
    - 이 교부신청서의 내용에 틀림이 없으며, 확인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2020. 00. 00

(단 체 명)대표자명 (인)

#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# 1.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

○ 사업목적(기획의도)

# 2. 세부추진계획

- 세부사업내용
  - 사업 추진 일정
  - ☞ 사업 준비 및 추진 과정 일정 별로 기재

- 세부 프로그램 내용
- ☞ 문학분야 : 수록 작품 목차, 분량, 주요 내용 등
- ☞ 시각분야 : 전시 주제, 작품 수, 작품 크기 등
- ☞ 공연분야 : 프로그램 구성, 공연 주제, 시놉시스 등

# 3. 조직구성(단체만 기입)

구분	성명	생년	성별	현직 / 주요경력	역 할	비고
회장						
부회장						

# 4. 홍보 및 마케팅 계획

○ 홍보 및 마케팅 계획

## ○ 관객개발 계획

계량 계획	참여 예술인 수	명 / 유료 : 무료 :
세당 세획	관객(독자), 행사 참여자 수	명 / 유료 : 무료 :

## ○ 사업 수입 목표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)

(단위 : 원)

구 분	내 용	매출목표액	비고
ex) 티켓 수익금			
	계		

# 5. 주요 참가자 현황

구분	이름	생년	성별	역할	국적
참가자					
1 1 기 시					

# 6. 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보조비목	보조세목	산출내역	금액	비고
운영비	일반수용비	(예) 홍보물 제작 : 1,000부 × 1,000원	1,000,000	
	일반수용비	(예) 액자, 의상, 소품 제작 : 1,000,000원 × 1식	1,000,000	
	일반수용비	(예) 출연료 456,000원 × 3명	1,368,000	
	공공요금 및 제세	(예) 출연료 원천세 44,000원(8.8%) × 3명	132,000	
	재료비	(예) 아크릴 물감, 캔버스 등 × 1식	1,000,000	
	임차료	(예) 대관료 1,000,000원 × 1식(1주일)	1,000,000	

<sup>※</sup> 아래 보조비목 및 세목 참고하여 작성

보조비목	보조세목		
	보수		
	기타직보수		
인건비	상용임금		
	일용임금		
	기타인건비		
	일반수용비		
	공공요금 및 제세		
운영비	임차료		
	재료비		
	일반용역비		
	국내여비		
여비	국외여비		
	국외교육여비		

# 7. 기대성과

- $\bigcirc$
- $\bigcirc$
- $\bigcirc$
- $\bigcirc$

### ※ 붙임 (청렴 이행서약서)

### 대전문화재단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재단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0. 00. .

(단체명) 대표 (서명)

(단체명)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(서명)

(단체명)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

### [첨부 2] 사업 변경신청서 양식

# 2020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변경신청서

2020년 예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단체(개인)의 ○○○○ 사업에 대한 내용 또는 일부 소용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검토 및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모사업명	2020 예술창작	지원	분 야	
신청사업명				
시청다네	단체명/이름			
신 청 단 체 / 신 청 자	대표자명		연 락 처	010-
7 L 8 A	실무자명		연 락 처	010-
사 업 비	보 조 금	0,000,000(원)	자 부 담	0,000,000(원)

(단위 : 원)

변경항목		비고			
(예시)		변경 전		변경 후	(변경예산 산출근거)
(사업내용)		이 있는 경우 기입 장소, 사업내용 등)			
(예 산)	예: 인쇄비	2,500,000		2,100,00	0
	합계		합계		

- ※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
- ※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(견적서 포함)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. .

(단 체 명) ○○○ (직인)

### [첨부 3] 사업 포기신청서 양식

# 사업포기 신청서

### ○ 사업기본정보

관리번호	단체명	
분야	단위사업	
결정액	사업명	

## ○ 신청정보

성명	신청일	
직위	생년월일	
전화번호	휴대전화	
팩스번호	E_Mail	
주 소		

### ○ 포기사유

내용			
-110			

위 내용에 틀림이 없으며, 해당 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.

2020. 00. 00

신청자명 (인)

#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#### [첨부 4] 정산실적보고서 양식

# 2020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성과보고서

# 1 시업 개요

공모사업명	2020 중견예술(	인지원 ※ 재단 선정 시업명 기재	분야(장르)			
신청사업명						
ILO OLZI	총 사업 기간	2020년 월 일 ~ 2020	0년 월 일/	총 일		
사업일정	실 사업기간	2020년 월 일 ~ 2020	0년 월 일/	총 일		
사업 장소	장 소 명					
	단체명/이름					
신 청 단 체	대표자명		연 락 처	010-		
(대표자명)	네파시		이 메 일			
/ 신 청 자	실무지명		연 락 처	010-		
	2TM6		이 메 일			
사 업 비	보 조 금	0,000,000(원)	자 부 담	0,000,000(원)		

2020. 00. 00

(단 체 명)대표자명 (인)

#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#### ※ 작성 시 유의사항

- 성과보고서는 한글(Hwp), MS-word 파일로 작성
-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주세요.(이미지 파일크기 조정 무료 프로그램 사용) ※ 홍보물, 이미지 등은 본 성과보고서 외 별도로 첨부파일 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성과보고서 상에 '해당사항이 있을 경우'라고 표시된 부분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.
- 기존 양식(표)를 준수하되,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(표)를 변경하여 작성하십시오.

# 2 시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

○ 사업목적(기획의도)

# 3 세부 추진내용

- ☞ 공연, 전시 등 사업 일정·내용별 추진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사업 추진 일정

○ 세부 프로그램 내용

# 4

# 사업성과

○ 사업성과

(※필수)		참여 예술인 수		명	
	계량적 추진성과			□ 본 사업(공연, 전시, 발간) 관객/관람객 등 참여자 수 기입 명	
		관람객 수	유료	명	
	수상실적	□ 본 사업과 관련한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수상 주관기관, 수상내용, 일시·장소 등 상세히 기입)			
비계	국내 · 외 초청실적	☞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·외로 추가 초청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초청 주관기관, 사업내용, 일시·장소 등 상세히 기입)			
량 적 추 진 성 과	추진성과 (필수기재)	<b>☞</b> 본 사업 진행으로	인한 성과	를 서술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	

○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

5

# 인건비 지급내역

- ☞ 사례비,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125,000원 이상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(8.8%) 납부액도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지출	성 명	주 소	주민등 <del>록번</del> 호	연락처	실 지급	원천세	인건비
부문	8 8	T - T	TUOTUY	신국시	금액	납부액	총액
			_				

6

# 예산 집행내역

☞ 실 지출액 및 보조금 잔액, 이자 등 전체 지출내역에 대해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원)

총금액(총소요액)		보조금 수령액	
보조금 집행액		보조금 집행잔액	※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
예금이자	※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		

(단위 : 원)

보조비 목	보조세목	산출내역	집행액	지출일
		계		
운영비	일반수용비	(예) 홍보물 제작 : 1,000부 × 1,000원	1,000,000	18. 7. 20
	일반수용비	(예) 출연료 500,000원 × 3명	1,500,000	18. 7. 24
	재료비	(예) 아크릴 물감, 캔버스 등 × 1식	1,000,000	18. 7. 15
	임차료	(예) 대관료 1,000,000원 × 1식(1주일)	1,000,000	18. 7. 10

# 사업수행 이미지 자료

□ 공연, 전시 등 사업을 수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표가 부족 할 경우 표를 복사 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참고자료 첨부 (공연 연주, 전시 및 행사진행 사진 등) - 문학분야 : 발간 책자 사진

- 시각예술분야 : 전시 전경 사진

- 공연예술분야: 리허설, 공연실황 사진

<사진설명> <사진설명>

# 8 시입 홍보 / 보도 실적자료

□ 단순 행사 일정 소개 기사는 제외, 신청자의 작품 활동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중점 보도한 언론 홍보, 보도한(신문, TV, 온라인 기사) 자료나 전문가 리뷰 첨부 / 언론사명, 기사 게재일, 장소 등 기재

연번	이미지 자료	내 용	
	홍보/보도 이미지 첨부	기사명	
		언론사명 (온라인URL)	http://www.
		주요내용	요약 작성
		게재일	
		기사명	
2		언론사명 (온라인URL)	http://www.
2		주요내용	요약 작성
		게재일	

# 9 홍보물 실적자료

※ 필수 : 아래의 실적자료의 원본 이미지 파일을 성과보고 시 추가 제출

☞ 공연, 전시의 포스터, 리플렛 등	등 관련 사업을 위해 제작된 홍보물	를 이미지
포스터	리플렛	기타

# 10 통장사본

☞ 보조금 통장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거래내역 사본 이미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『2020년 <u>'사업명 기재'</u>』인건비 청구 영수증

□ 일시: 2년 □ 장소: C □ 주관단처 위「"예)(	네: 00000부 예술창작지원"	0000 사업」 사항을 이행힐	에 참여 하였으 날 <b>것을 확인 합니</b> 020년 월 일		! 건에 대하여 취!	득한 정보의
				1.0	)	
		삼식사(사데)	자 명)	( ;	21)	
※ 개인정보 <sup>-</sup>	수집·이용에 관한	안내				
		[개인정	보 수집 · 이용	동의]		
■ 관련법규	: 개인정보 보호	.법 제15조, 저	22조 / 국세기본법	제85조의	<b>의</b> 3	
수집하려	는 개인정보의 힝	'목 개인정	!보의 수집·이용의 :	목적	개인정보 보유 및 (	이용기간
0	l름, 연락처	본인	인 식별 절차에 이용	3	세무 신고 및 과세	VII 910
주민:	등록번호, 주소	원	천징수 영수증 발송	5		
	계좌정보		대금지급		5년간 보관	
			거부에 따른 불이			
		를 거부할 권리	기가 있으나, 거부하	·실 경우	관련 사례비 지급 및	세무신고가
	을 알려드립니다. W이정보보하변, 등	과려 번규에 이	거하여 사기 보이으 위	와 칼이 개	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	도이하! [다
		□ 동의힘		되 ᇀ어 게 등의안함		0-16-00.
		[고유식	별정보 처리 동	의서]		
■ 관련법규	: 개인정보 보호	.법 제24조 / :	소득세법 제145조 /	/ 국세기년	본법 제85조의3	
수집하려	는 개인정보의 힝	목 개인정	보의 수집·이용의	목적	개인정보 보유 및	이용기간
주민등록번:		: 등 대·	금지급 및 세무신고	)	세무 신고 및 과세	
					5년간 보관 기 발급)에 근거로 동	
	제143조(기다조= 번호를 수집함을		경우시기와 권신경=	7875 <u>-</u>	기 월급)에 근거도 중	:의열자 없이
			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	와 같이 개	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	동의합니다.
	_	□ 동의힘	<b>_</b> 5	등의안함		
지급액	고유식별정보   (주민번호)	전화번호	주 소		계좌정보	청구 확인  (서 명)
				은 행 명	1	- ,
OI						
원				예금주명		
				계좌번호	5	1